#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9 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김병기・박 정・김주영

모경종・박균택・윤종군

정성호 • 문진석 • 박상혁

장경태 • 박해철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·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,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납북피해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

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필요한"을 "단체의 운영비, 관리비 등 필요한"으로 한다.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)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판사・검사・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
 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· 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 상 재직한 자

- 3. 통일부·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
- 4. 남북관계,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
-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3(피해위로금)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  - ②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납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,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  - ③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  - ④ 피해위로금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세 및 지 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4(피해위로금 지급신청)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으로서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5(심의 및 결정)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아니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6(결정서의 송달)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

-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 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2조의7(재심의) ①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 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을 준용한다.
- 제12조의8(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의 지급) ①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9(피해위로금의 환수)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피해위

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
-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- 제12조의10(소멸시효)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제17조 중 "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"을 "위원회·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위원"으로 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조(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 제12조(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 한 재정지원) 정부는 위원회의 한 재정지워) -----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 로 구성된 단체 또는 6 · 25전 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 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체의 운영비, 관리비 등 필요 제12조의2(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 <신 설> 원회)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 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(이 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납북자가족 등으로

<u>구성된</u>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 직한 자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·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- 3. 통일부·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
- 4. 남북관계,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
-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.
-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3(피해위로금) ① 납북자

<신 설>

및 납북자가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을 지 급받을 수 있다.

- ②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납 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,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- ③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④ 피해위로금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 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5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12조의4(피해위로금 지급신청)
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으로
서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피
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
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

<신 설>

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5(심의 및 결정) ① 심의 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 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

<신 설>

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6(결정서의 송달)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위로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의7(재심의) ① 제12조의5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 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 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

<신 설>

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을 준용한다.

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9(피해위로금의 환수)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

제17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 및 심의위원-----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다.

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피해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 은 경우
-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 수의 예에 의한다.
- 제12조의10(소멸시효) 피해위로금 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 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 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.

제17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·실무위원회의

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
	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
	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
	피해위로금을 받게 한 사람은
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
	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제18조(</u> 벌칙) (생 략)	<u>제19조(벌칙) (현행 제18조와 같</u>
	흥)